

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기준 변경 알림(수익적 연구활동)

□ 외국인 유학생 수익적 연구활동 시간제 취업허가 기준 변경 알림 (시행일 : 2021.04.28)

현행 기준	개정 기준(안)
<p>마.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</p> <p>○ 유학생(D-2)의 수익적 연구(원)인턴 활동 : 원칙적 금지</p> <p>- 단, 유학생(D-2)의 학업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수익적 연구(원)? 인턴 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</p>	<p>마.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</p> <p>○ 유학생(D-2)의 수익적 연구 활동</p>
<p>① 소속대학 내 학업과 연계된 수익적 연구(원)인턴 활동에 대해서는 시간제 취업허가 不要</p> <p>- 단, 소속대학 내라도 학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수익적 활동을 하는 경우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임</p> <p>※ 학업과 연계 여부는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(과정)을 원칙으로 하며, 선택과목(과정)일 경우 남용여부를 판단해야 되므로 허가신청의 대상임</p>	<p>① (소속대학 내 연구활동)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,</p> <p>i)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: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</p> <p>ii)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: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</p> <p>※ 학업 연계 여부는 ①지도교수 확인서 및 ②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를 제출받아 심사</p>
<p>② 소속대학 외에서 학업과 연계된 수익적 인턴활동은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허용</p> <p>- 외부에서 사적인 수익적 연구(원)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</p>	<p>② (소속대학 외 연구활동)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로서,</p> <p>i)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: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</p> <p>※ 학업 연계 여부는 ①지도교수 확인서, ②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, ③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참여 사유서를 제출받아 심사</p> <p>ii)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: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필요</p> <p>※ 연구(E-3)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심사기준은 연구(E-3)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</p>
<p>③ 자연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에서의 수익적 연구(원) 활동은 학업연계 여부를 불문하고 예외적으로 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허용</p>	<p>&lt;좌동&gt;</p>
<p>허가제외대상 예시</p> <p>▶ 교내에서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십, 연구프로젝트 참여*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</p>	<p>&lt;삭제&gt;</p>

우

☞ 연구프로젝트는 학점취득 등과 연계한 대학 내 프로젝트에서 대학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, 이외 학점취득과 무관하게 개인이 대학 내 프로젝트 참여로 수당을 받는 경우엔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이며,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프로젝트 참여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무자격자의 불법취업에 해당됨

\* 연구프로젝트 참여(필수/선택 무관)는 지도교수의 감독아래 대학 내 학점취득, 논문작성 등의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(지도교수와 함께 참여하더라도 프로젝트 주관인 소속 대학이외의 기관인 경우는 허가 필요)하며, 대학 외부에서 주관(공동주관은 제외)하는 연구프로젝트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

<신설>

※ 수익적 인턴활동에 대해서도 상기 기준 준용